

환경부고시 제2019- 67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
제정된 「상수도설계기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9년 4 월 10 일

환 경 부 장 관

상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

제2조 별지의 상수도설계기준 중 상수도 내진설계(KDS 57 17
00)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붙임 : 상수도 내진설계(KDS 57 17 00) 전문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